

신용대출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**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**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**대출상품의 주요 내용**을 쉽게 **이해**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아래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**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**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- 고객님께서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■ 유사한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- **신용대출**은 고객님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가 정해지고, **담보대출**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 후 대출이 실행되며, **보험계약대출**은 당사에 보유한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대출이 지급됩니다.
- 일반적으로 **신용대출이 담보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아** 동일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이용시 이자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
■ 민원·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

Q1. 대출이용과 신용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?

- 대출상품 이용 시, **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**,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다른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등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[8.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부분 확인]

Q2.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
-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 가능하며, 당사 신용대출의 경우 **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**

Q3.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?

- 대출 이용 시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, 대출상품에 따라 인지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 [2.수수료 등 비용부담 부분 확인]

Q4. 대출기간 동안 대출이자율과 이자 납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
- 고객님의 **변동금리나 혼합금리 방식**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 실행시 적용되는 이자율 뿐만 아니라, 그 이후의 변동여부와 변동폭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금리 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 **금리변동 방식과 상환방법에 따라 향후 부담하셔야 하는 이자 납입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히 확인**하셔야 합니다. [4.대출이자율 및 5.대출상환방법 부분 확인]

■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
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, 연체정보 등록, 이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예: 대출원금이 1억원, 대출이자 5%인 경우, 최대 월 연체이자 666,666원 발생) 상세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[6.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]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- 당사 **인터넷 홈페이지**(<http://www.samsungfire.com>) 또는 **고객센터**(1588-744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**(<http://www.fcsc.kr>) 또는 **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**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1 | 상품의 개요 및 유의사항

상 품 명			
적용금리	_____ %	대출금액	_____ 원
금리적용방식	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고정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	대출기간 (또는 만기일)	_____
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대상	휴일상환 가능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대상
대출상환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원리금 균등상환 <input type="checkbox"/> 원금 균등상환 <input type="checkbox"/> 만기 일시상환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

2 | 수수료 등 비용 부담

✓ 고객님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[대출금액과 이자, 아래의 수수료 등]을 합산한 총액이며,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심사 후 보험회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■ 인지세

※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고객과 보험회사가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

대출금액	5천만원 이하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0억원 초과
인지세액	비과세	7만원	15만원	35만원
고객부담	-	3만 5천원	7만 5천원	17만 5천원
회사부담	-	3만 5천원	7만 5천원	17만 5천원

■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한 인지세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**채무자가 부담**하여야 합니다.

3 | 금융소비자의 권리

가. 대출계약철회권

■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,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,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**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 내에**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
■ 대출계약 철회를 위해서는 서면, 전화 등으로 **보험회사에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**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
■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
■ 대출계약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**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
나. 금리인하요구권

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

※ 아래 주요내용을 차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(보험업법 제110조의3)를 말합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(상품별로 적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)
 - 소득 증가 : 소득의 증가는 대출감소, 연체해소, 금융재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보험회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 - 신용도 상승 : 보험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또는 신용점수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지 주로 활용하므로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상승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내부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.
 - 보험료 납입내역 : 당사 월납보험료 및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모바일, 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(신청시기·횟수 제한 없음), 보험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(정책자금대출·집단대출 등)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**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**
- 보험회사는 **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**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- 또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는 경우 금리조건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실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.

다. 개인신용평가결과대응권

- 개인신용평가결과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**자동화평가*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**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**정정·삭제·재산출을 요구**할 수 있는 권리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)를 말합니다.
 - * 보험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
-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,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,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**설명하여 줄 것을 보험회사에 요구*할 수 있습니다.**
 - * 삼성화재 홈페이지(<http://www.samsungfire.com>)를 통해 신청
- 보험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**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**, 기초정보가 정정·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, **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.**
 - 자동화 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
 -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-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 -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라. 위법계약해지권
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금소법')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**해지할 수 있습니다.**
 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금소법 제17조제3항 위반)

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금소법 제18조제2항 위반)
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금소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금소법 제20조제1항 위반)
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금소법 제21조 위반)

▣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**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**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마. 자료열람요구권

- ▣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의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▣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▣ 보험회사는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**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**

바. 채무조정요청권

- ▣ 채무자는 실직, 폐업, 질병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곤란한 경우, 보험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▣ 보험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,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, 심사결과에 대해 채무자에게 곧 통보합니다.

4 | 대출이자율

▣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**고정금리** 방식입니다.

	고정금리
운영 형태	
특징	▸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
장점	▸ 시장금리 상승기 에 금리 인상이 없음
단점	▸ 시장금리 하락기 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

▣ 대출금리 결정(변동)요인

- 대출금리는 보험회사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**원가요소**와 **목표이익률(마진)**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.
-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**대출 기준금리**와 **가산금리**의 합으로 표시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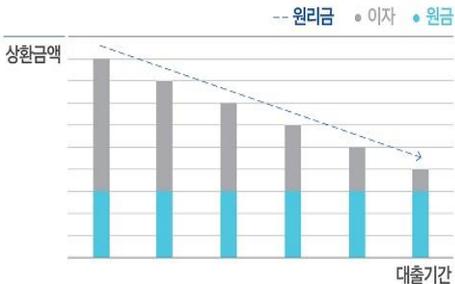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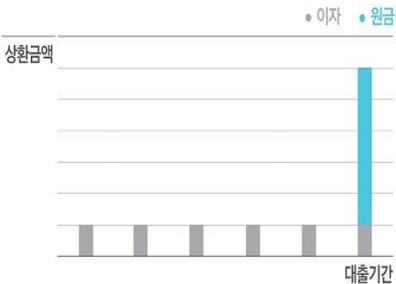
대출 기준금리	가산금리			= 최종 금리
	리스크 프리미엄	리스크관리비용 등 원가	목표 이익률	

- **대출 기준금리**는 대출금리 결정 및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, 삼성화재 장기보험신용대출은 '장기보험부채 조달금리'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**가산금리**는 보험회사가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,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.
 - **리스크프리미엄** : 보험회사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
 - **원가요소** : 고객의 신용도·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, 업무원가(인건비·전산처리비용), 세금(교육세 등) 및 준조세성 부담금(보증기관 출연료 등) 등
 - **목표이익률** : 보험회사가 설정하는 수익률
 - **가감조정 전결금리** : 부수거래 감면금리(고객의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할인금리), 전결 조정 금리 등

- 결정된 **대출금리**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기한연장, 채무자변경 등 **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**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5 | 대출 상환방법

▣ 상환방법별 특징

원금 균등상환	만기 일시상환
 <p>“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,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. ▶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<u>즉시분할상환 방식</u>이 있습니다. 	 <p>“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

■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·이자율·시기

- 동일한 금리·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※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(1천만원을 5% 이자율로 24개월간 대출한 경우)

-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

상환방식	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	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
즉시 분할상환방식	10,520,833원	▶ 1회 ~ 24회 : 458,333원~418,403원[점차감소]

-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

상환방식	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	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
만기 일시상환	11,000,000원	▶ 1회 ~ 23회 : 41,666원(이자만 납부) ▶ 24회 : 10,041,666원

■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

-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: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며,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■ 만기 상환시의 대출금 상환 방법

- 대출상담 콜센터,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, 입금전용계좌(가상계좌)를 통하여 편리하신 방법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.
 - 삼성화재 홈페이지 : <http://www.samsungfire.com>
 - 삼성화재 모바일APP : App store 또는 Play 스토어 다운로드
 - 대출상담 콜센터 : 1588-7444
- 대출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인터넷창구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, 가상계좌를 통해 휴일 중에도 상환이 가능합니다. (중도 상환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.)
- 만기상환시 마지막 원금, 이자금액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6 |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가. 연체이자 부담

- 연체이자율은 [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 3%]로 적용하며, 연체이자율은 **최고 연 19%**입니다.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이자율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구 분	연체기간	연체이자율
약정금액 3천만원 이상	1개월 이내	납입 지연된 원리금 상환(예정)액에 대해 [적용이자율+3%]
	1개월 초과	총 대출 잔액에 대해 [적용이자율+3%]
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	2개월 이내	납입 지연된 원리금 상환(예정)액에 대해 [적용이자율+3%]
	2개월 초과	총 대출 잔액에 대해 [적용이자율+3%]

■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
❶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**1개월(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은 2개월)까지는**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**1개월(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은 2개월)이 경과하면**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**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**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② 「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③ 「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, **2회(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은 3회) 이상 연속하여 지체**한 때에는 **기한의 이익상실**로 인하여 **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**를 내셔야 합니다.

④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

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※ 상기 1~4항에도 불구하고 **대출약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**, 기한의 이익 상실에도 불구하고 대출원금 중 **대출기한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적용됩니다.**
- ※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,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**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**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기한의 이익 상실로 만기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

- **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을 일정기간 연체**한 경우 (상기 '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' 참조)
- 채무자인 고객 소유의 **제예치금**(채무자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포함), **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,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(가)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** 등
 -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**모든(또는 해당) 대출금을 즉시 상환**하셔야 합니다.
- 보험회사에 대한 **수개의 대출채무 중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** 등
 -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**독촉·통지한 기간 경과시 모든(또는 해당) 대출금을 즉시 상환**하셔야 합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의 가계용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그 밖의 불이익

- **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**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**금융거래 제한(신용카드 정지 등)**받을 수 있고,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**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점수가 일정 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**
-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,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른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 -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-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**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**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**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**,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(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, 신용점수 하락 등)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채무조정 요청

- 계좌별 **대출원금(약정금액을 기준)이 3천만원 미만인** 채무자가 대출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**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**

7 |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

- ▣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,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▣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 -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, **대출계약 연장이 거절**될 수 있습니다.
 -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(공무원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)의 경우 **자격이 유지되는 경우**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8 |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**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**
- **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**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**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** 줄 수 있습니다.
-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·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**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

9 | 기타 유의사항

▣ 이자 납입방법

- 고객님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)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, 이자 납입일(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)에 잔고 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보험회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(지연배상금 포함)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- ▣ 보험회사는 고객님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추론하기 위하여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을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, 연소득 대비 연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은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10 |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

※아래 주요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	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고객님의 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
②	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 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, 연체이자를 일부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 됩니다
③	대출금 연체 등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 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

1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에 관한 확인사항

■ 아래는 「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방문판매인 및 전화권유 판매인(모집인)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.

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?

예

아니오

-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인(모집인)이 방문판매 등을 개시할 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합니다.
 -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인(모집인)의 소속과 성명
 - 해당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
 - 권유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
 - (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)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과 그 방법 및 절차
-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인(모집인)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야간(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)에 방문판매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.

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설명을 이해했다면 확인 서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◆ 본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◆ 본인은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◆ 상기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고객확인 : 20 (서명/인)

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(1588-7444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samsungfire.com>) 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<http://www.fcsc.kr>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